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1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 원	甲(㈜위솔자산운용 前임직원)

2. 조치내용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63조에 따른 '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'에 대하여 甲(㈜위솔자산운용 前임직원)에 과태료 5,000,000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

○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나,

- 甲은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로 매매사실 등 매매명세를 위솔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 제1항 제3호